



총론



1. 국제전파감시의 정의

2. 국제전파감시의 연혁 및 배경

가. 연혁

나. 배경

I. 총론

1. 국제감시의 정의

전파를 매체로 사용하는 무선통신은 주파수에 따라 전파특성이 달라지며, 그중 단파대는 전리층의 반사작용으로 지구 반대편까지도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단파대역에서 전파규칙이나 전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송신설비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주파수 편차 또는 점유대역폭이 크게 벗어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무선국에 혼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하고 각국의 전파관리 주관청에게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부속 무선통신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감시는 단파대역의 전파를 대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ITU에 통보하고 있다. 위반국이 발생하거나 우리나라가 등록된 주파수에서 혼신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해당 주관청을 대상으로 혼신제거 요구를 하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혼신보고서를 작성하여 ITU 전파통신국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 또는 외국의 주관청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도 전파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ITU-R 전파규칙 제16조에 규정된 국제감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16.1 전파규칙의 이행에 있어서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경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유해혼신의 신속한 제거에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조력하기 위하여, 모든 주관청은 관련 ITU-R 권고를 고려하여 감시시설의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감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확충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최대한으로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S16.2 국제감시시스템은 주관청이 ITU-R 권고 SM.1139 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감시국으로 구성된다. 국제감시시스템의 감시국은 주관청에 의하여 운용되거나, 주관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의하여 운용될 수 있으며,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감시기관에 의하여 운용되거나 국제 감시기



관에 의하여 운용될 수도 있다.

S16.3 국제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감시기관 또는 각각의 주관청은 중앙감시국(centralizing office)을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감시정보의 요청은 중앙감시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감시정보는 중앙감시국을 경유하여 전파통신국 또는 타주관청의 중앙감시국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S16.4 그러나 위 규정은 주관청, 국제기구 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목적의 사설 감시체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S16.5 실행 가능한 한 모든 주관청은 타 주관청 또는 전파통신국이 요청하는 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S16.6 국제감시시스템의 이용과 운용에 관한 행정 및 절차적 요건은 ITU-R 권고 SM.1139 에 따라야 한다.

S16.7 전파통신국은 국제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감시국이 제공하는 감시결과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제출한 감시국의 목록을 포함하여 감시자료를 발췌하여 사무총장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하여야 한다.

S16.8 국제감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감시국으로부터 보고된 감시결과와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주관청은 명확하게 식별된 어떤 발사가 전파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전파통신국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파통신국은 그러한 통보와 의견에 대하여 관계주관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국제감시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유해전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통신망에 대한 혼신유무를 사전에 조사하여 자국의 전파권익 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해한 혼신의 지속적 제거를 위하여 각 국의 무선국 출현현황을 조사하여 전파품질 및 운용방법이 전파규칙에 적합한가를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ITU-BR 또는 해당 주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단파대역 전파스펙트럼에 대한 국가별, 대역별, 국종별 분포상황 및 이용량을 조사하여 주파수분배표상의 주파수 할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국제전파감시 업무의 능동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술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회의의 참가 및 선진 전파감시기관의 견학 또는 위탁교육 등 우리나라 전파권익 보호와 선진 기술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2. 국제감시의 연혁 및 배경

가. 연혁

- 1947. 6. 1. 최초의 전파감시 시작(체신부「전무국」광장분실 설치)
- 1948. 11. 4. 국제전파감시의 시작(대통령령 제27호「체신부직제」개정)
 - 전무국 산하「무선과」에「국제통신국」신설, 국제통신 사무 담당
- 1949. 11.22. 서울, 부산, 광주 전파감시국 신설
 - 무선전신법에 의한 전파감시업무중 「국제감시」실시
- 1952. 1.3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가입
- 1954. 9. 1. 「국제전기통신조약」 공포
 - 헌법 제6조에 의해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1964. 10.29. 강릉전파감시국 신설
- 1983. 12.30. 「중앙전파감시소」 발족(소장 박성득)
 - 3과(관리과, 감시1과, 감시2과), 6개분소, 10개분실 설치
 - 당진분소 및 제주분소 신설 (기존 전파감시국을 분소로 변경)
- 1987. 12.15. 중앙전파감시소를 「중앙전파관리소」로 개칭
- 1991. 10.11. 국제방탐업무 처리방법 개선 (본부 → 중앙전파관리소)
- 1991. 11. 5. 국제방탐업무 협조체제 확립(중앙전파관리소 → FCC 호노롤루 감시국)
- 1992. 12. 2. 대전분소 신설
- 1996. 2.22. 전주, 대구분소 신설
- 1997. 11. 4. 서울분소「국제감시계」신설
- 1998. 11. 9. 중앙전파관리소「국제업무계」 및 부산분소「국제감시계」신설
- 2000. 4. 28. 청주분소 신설
- 2002. 3. 5. 중앙전파관리소 국제감시국소 재편
 - 6개분소(서울·부산·광주·강릉·당진·제주분소) → 3개분소(서울·부산·당진분소)
- 2003. 3. 21. 중앙전파관리소 조직 개편
 - 서울, 부산 국제감시계 → 서울, 부산 국제업무팀



나. 배경

(1) 우리나라의 ITU가입

ITU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7년 10월 미국 애틀랜틱시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의 전권위원회에서 ITU조직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협약개정에 관한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동년 10월 24일에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정을 맺게 됨으로써 UN전문기관으로써 ITU가 탄생되었다.

ITU의 정기회의로는 4년마다 열리는 전권위원회와 세계전파통신회의, 전파통신 총회가 있고 그밖에 관리이사회의 사무총국·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세계전기통신 표준화회의·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가 처음으로 전기통신에 관한 ITU국제회의에 참가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1월 15일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의 임시주파수위원회 및 제3지역(아시아) 주관청 회의였다.

우리나라 대표가 임시주파수위원회 회의 기간중인 1949년 2월 27일에 회의장에 도착하였으나 소련대표의 완강한 반대로 옵서버로서의 참석마저 거부당하고 복잡한 절차와 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각 국 대표간의 진지한 찬반토의를 거쳐 4월 1일에야 비로소 정식 옵서버로서 KOREA라는 국명의 좌석을 얻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대표가 ITU정식회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옵서버의 자격만 인정되었을 뿐이지만 ITU상설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후일 외교절차에 따른 정식 가입신청서를 ITU 사무총국에 제출할 수 있었고, 그 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외 통신에 필수적인 주파수 및 국제호출부자열 HLK-HMZ의 획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기술 문제의 조사 연구에 힘씀으로써 후일의 전기통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전파감시업무의 개시

1949년 8월 15일 이전에는 전파에 관한 독립된 특별법이 없었으므로 일제하에서의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무선전신법, 사설무선전신 무선전화규칙 및 방송용 무선전화 규칙 등에 의거하였으나 이러한 규칙 등은 관료적인 일제의 유물로 일반 대중이 동법에 의한 허가를 얻기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따라서 무선설비 이용의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미군정에서 전파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나타낸 관심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라디오 수신기를 등록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청취료를 징수하여 공보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남한의 방송은 공보처와 체신부가 공동 관리하는 조선방송협회가 독점하고 있었다.

이 협회 산하에는 11개 방송국이 있었으며 라디오 수신기의 소유자는 매월 10원씩의 청취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요금은 1947년 4월에 4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948년 4월 15일에는 다시 50원으로 인상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100원으로 인상되었다.

1945년에 등록된 라디오는 20만8천대이였으나, 1947년 말 현재 신고를 마치고 요금을 납부한 사람은 11만천명이며 남한의 라디오 수신기 총수는 17만5천대이었다. 그 중 3분의 2가 남한 인구의 15%에 불과한 서울을 비롯한 8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약 5만대는 진공관, 콘덴서 등의 부속품이 없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리하여 협회의 미국인 수석 고문은 회의를 소집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모아들인 2만대의 수신기를 점차적으로 수리하여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수입증대를 도모하려고 하였는데 우선 3천대를 시험하기 위하여 산출된 예산이 7천만원이었다.

미군정에서는 계속하여 라디오 부속품을 들여오고 일본인 기술자까지 불러다가 수리한 결과, 1948년 4월말의 라디오 등록대수는 15만6,733대로 증가하였다.

국내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를 당국에서 등록하게 한 까닭은 방송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지만 단파방송수신기에 허가 제도를 적용한 까닭은 국가의 안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체신부는 민간인의 단파방송 청취에 관한 허가권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1950년 3월 9일에 허가된 실적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508명이었으며, 그들은 음악과 교양 등에 관한 프로그램만을 청취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청취하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 경고를 하여 오다가 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 3월 전무국장은 허용된 목적 이외의 단파수신기 사용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파의 수신보다는 발사하는데 있었다. 전파의 발사가 미치는 영향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관례를 벗어나 외국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체신당국으로서 우선 효율적인 전파관리를 통하여 무선통신사업의 일원화를 꾀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해방을 계기로 전파의 비밀이 철폐됨에 따라 마구 설치되었던 무선국을 조정하여 국제통신의 관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파의 물리적인 혼란보다 더욱 긴박하였던 사정은 좌익계열의 전파를 이용한 간첩행위이었다. 공산당의 소요사건과 이에 따른 통신기관의 피해는 물론 그것에 못지 않게 심각하였던 것이 바로 전파에 의하여 전달되는 북한공산당의 방송내용이었다.

이리하여 1949년 7월 23일 장기영 체신부장관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불법 무선시설 단파청취단속, 무선 라디오와 특히 승용차에 달린 라디오 단속을 하는 한편, 앞으로는 단파청취자를 제한하여 신원보증인 확실한 자에게만 허가할 방침이다’고 밝힌 바 있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 체신부장관은 부내 적색분자의 숙청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단파탐지기의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체신부는 치안국과 협력하여 불법무전기를 적발하기 위하여 직접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1949년 5월에는 무전기의 제조나 판매에 종사하는 자는 그 달 19일까지 영업계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9월에는 이러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당시 치안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남로당 계열에서 각 학교의 기술자와 여러 업자를 매수하여 도청은 물론, 불온통신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리업자를 포함한 무전기 취급업자는 재등록을 하게 하고 그 판매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전파의 발사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제조와 판매에도 엄중한 감시를 한 까닭은 무전기를 북한으로 밀송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아직 전자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소련에 의해 점령당한 북한에서는 통신기기는 물론, 전기용품의 부족상태가 훨씬 심하여 북한의 전력과 남한의 전기용품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전파감시업무는 미군정 시절인 1947년 6월 1일 체신부 전무국 무선과 직속으로 광장분실을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광장리에 설치하여 불온 및 무선통신보안 위주의 전파감시업무를 개시하였고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여 체신부가 발족됨에 따라 이때의 전파감시업무를 체신부 직속인 전무국 무선과에서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정부가 수행한 전파감시업무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전무국 무선과 광장분실이 모체가 되어 1948년 8월 13일 지방체신관서설치법에 따라 1949년 11월 20일 광장분실을 폐지하고 동년 11월 22일에 정식으로 전파감시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전파감시국이 발족되었다.

서울전파감시국은 1950년 6월 25일 동란을 맞이하여 모두 소실되는 등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서울 수복 후 1952년 8월 성동구 성수동 1가 276번지로 옮겨와 6.25동란중 일시 중단하였던 전파감시업무를 재개하였다.

(3) 국제전파감시업무의 시작

1952년 1월 31일에야 비로서 대한민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특히, 국제조약 제27호로서 1954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 국제전기통신조약은 당시 헌법 제6조의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는 규정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규율을 갖게 되었다.

국제 관례에 어긋난 전파의 발사는 외국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시비를 일으켜 체신당국으로서는 우선 효과적인 전파관리를 통하여 무선통신 사업의 일원화를 꾀하고 나아가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무선국을 조정하여 국제통신의 관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전파관계에 있어서 이 조약에 의하여 당연하고도 의무적으로 국제적인 임무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국제전파감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